

산소치료 처방전

※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[] 재발급

수진자 (진료받은 사람)		건강보험증 번호	성명
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
진료과목			
상 병		상병명	상병코드
산소처방 지시사항 (1일에)	안정 시	L/분	시간
	운동 시	L/분	시간
	취침 시	L/분	시간
동맥혈 가스검사 결과		[] 산소분압(PaO2)이 55mmHg 이하	
		[] 산소포화도(SaO2)가 88% 이하	
		[] 산소분압(PaO2)이 56~59mmHg	[]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55% 초과)
		[] 산소포화도(SaO2)가 89% 이상	[]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[] 폐동맥고혈압
산소포화도 검사결과		[]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	
		[] 산소포화도가 89% 이상	[]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55% 초과) []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[] 폐동맥고혈압
호흡기장애 정도		[] 심한 정도 [] 심하지 않은 정도 [] 2019.7.1.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된 자(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 가능) ※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 또는 장애등급을 의미함	
산소치료 처방기간		. . . ~ . . . 까지	
처방전 사용기간		※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	

년 월 일

요양기관 명칭

(요양기관 직인)

요양기관 기호

담당의사

(서명 또는 인)

면허번호

제

호

전문과목

전문의 자격번호

유의사항

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3.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·결핵과·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.
4.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5.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"재발급"에 ☑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6.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7.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, 서비스 내용,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.
8. 2019.7.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
9.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10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11.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,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,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